


<h1>보도자료</h1> <p>2022. 11. 28.</p>		<h2>양형위원회</h2>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31-920-5601)</p>

## 양형위원회, 2022. 11. 28.(월) 국제 콘퍼런스 개최

### 『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 』

(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 ■ 개요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2. 11. 28.(월)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 ■ 행사 개요

- 개회식 및 기조연설
  - 개회사: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 축사: [김명수](#) 대법원장
  - 영상축사: [Carlton W. Reeves](#)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위원장  
[William Davis](#) 영국 양형위원회 위원장
  - 기조연설: [천대엽](#) 대법관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Systems for Reasonable Sentencing Worldwide)-」

. 세계 주요 국가에서 그동안 양형의 합리화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주요 방안을 살펴본 후 그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제1세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 재범 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논의

- 제2세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 산업재해 등 법인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외국의 사법제도와 양형정책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토론

■ 발표 및 토론내용

○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사회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① 최승원 고법판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양형기준 제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of Implementing Sentencing Guidelines System)」라는 제목으로 발표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양형기준

제도 시행 성과로 ① 양형기준 설정 작업의 지속적 수행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 범위의 확대, ②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재판실무의 정착, ③ 양형 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④ 양형이유의 충실한 설명을 통한 재판의 설득적 기능 제고, ⑤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의 반영을 들었음.

- 양형제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① 양형기준의 체계적 일관성 확보, ② 집행유예 기준의 보완, ③ 양형기준 적용 현황의 지속적 분석과 양형기준의 수정, ④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의 수정, ⑤ 양형심리의 활성화, ⑥ 양형조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제시함

② **Julian ROBERTS** 교수가 「The Evolu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with a focus on England and Wales(영국을 중심으로 본 양형기준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비교법적 관점에서 양형기준제의 발전 상황, 영국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과 성과, 영국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의 과제 소개
- 영국 사례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소개 : ① 양형위원회의 다수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고, 양형기준 설정에 판사들이 많이 관여하는 경우 양형기준은 사법부에 받아들여짐. ② 양형기준은 반드시 상당 수준의 사법적 재량을 허용해야 함. ③ 양형기준은 양형 결정의 투명성과 양형의 일관성을 향상시키지만, 실형률, 재범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Matthew KLEIMAN** 부국장이 「Data as the Lifeblood of Sentencing Commissions(양형위원회의 필수요소: 데이터)」라는 제목으로 발표

팬실베니아 주 양형위원회의 데이터 기반 양형정책과 실무를 소개함. 성공적인 양형위원회는 양형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책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양형 정책과 실무'에 중점을 둔 객관적 기관이라고 강조함

④ **타노이 쿠라토** 판사(일본 최고재판소 사무국 형사국원)가 「**The Recent Trends of the Sentencing Practices in Japan(일본 양형실무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일본의 재판원 재판(Saiban-in Trials, 2009년 시행된 제도로 시민이 판사와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 우리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에서는 양형편차를 줄이고 양형의 적정성,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양형 참고 시스템(Sentencing Reference System)을 구축하고, ② 양형 통계 그래프(Sentencing Graph)를 이용한다고 소개

⑤ **Johannes KASPAR** 교수가 「**Systems for Reasonable Sentencing Worldwide – Recent Trends in Germany(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 – 독일의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독일의 양형 체계는 법적 안정성과 형벌의 예측 가능성이 아닌 사법적 재량과 유연성에 중점을 둠
- ② 양형기준이나 양형위원회의 도입을 포함한 양형법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결되었고,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독일에서 양형편차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③ 독일 학계는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구속력 없는 연방 양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도입에는 불투명성과 차별, 편향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많음
- ④ 사건으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실무자와 학자로 구성된 양형위원회가 독일에도 도입되어야 하고, 한국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2주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Reasonable Sentencing: Future Challenges)**」

- 제1세션: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

(사회: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발표]

① Jörg KINZIG 교수가 「Assessing the Risk of Recidivism in Germany(독일의 재범 위험성 판단)」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독일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따라 정해짐. 범죄전력은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됨
- ②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지역별로 상당한 양형 편차가 존재함. 그러나 양형기준제는 채택되지 않음
- ③ 법관의 판단을 조력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견해가 많음
- ④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그러나 이에 대한 몇몇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함

② Melissa HAMILTON 교수가 「Assessing Recidivism Risk Objectively(재범 위험성의 객관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

- 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채택된 평가도구는 해당 지역의 실무 관행과 재범위험성과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그 지역 내의 인구에 적용하기에 유효적절하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함. 이러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그 자체로 특정한 중요성을 갖거나 권고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고려할 증거의 하나임
- ②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는 사법시스템이 고위험의 사람들에게 수용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평가자의 개인적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며, 분석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 ③ 그러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오류도 존재함. 특히 개인 또는 집단의 재범 위험성 수준을 과대 또는 과소 예측하도록 하는 편향을 경계해야 함. 예컨대, 고용과 교육 수준에는 인종 및 계층적 편향이 내재되어 있음. 재범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일부 요소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정신병, 연령, 지역, 젠더 등). 또한 재범위험성은 고정된 것이 아님

## [지정토론]

### ① 권미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요지

- 독일과 달리 영미법 국가에서 위험성 평가도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함: ① 영미법은 독일법과 달리 책임원칙에 근거한 형벌과 예방목적에 근거한 보안처분을 명백히 구별하지 않는 형사 제재 체계를 가지고 있음. ② 미국은 독일에 비해 높은 범죄율과 이로 인해 과밀화된 교도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컸음. ③ 피고인에 대해 재범위험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무죄 심리와 양형심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유무죄 판단이 끝난 후 양형심리에서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는데 부담이 적었을 것임.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서 작성되는 판결전보고서에 피고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결과가 포함될 수 있음
- 통계적 방식에 기초한 위험성 평가도구는 양형에 관한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 중 하나인 것이지만 법관의 판단 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 법관으로서는 여전히 그 평가결과를 다른 요소와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
- 결국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객관화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fairness)의 문제임

### ② 김도희 검사(광주지방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수사 단계에서도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 ② 특정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여부, ③ 심신장애 상태, 약물

중독 상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피의자에 대한 치료 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범위험성 판단이 필요함

- 검사가 수사 중 피의자의 '재범위험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PCR-L 과 KORAS-G를 활용하여 결과를 회신하기도 함
- 독일 및 영미의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형집행 이후 재범위험성 판단에 관하여 질의

### ③ **장진환**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 요지

- 현재 세계 대부분의 법률은 법관이 전문가의 재범위험성 판단을 참고하도록 할 뿐이지, 전문가의 판단 결과에 구속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내용은 타당함.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
  - 전문가의 평가가 법관의 평가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혹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관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재범위험성이 판단되면 안 됨
  - 재범위험성 판단 과정에서 검사나 법관에게 요구되는 구체적 능력과 고려 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성에 대한 과대평가의 이유와 방지대책을 질의
- 제2세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Corporate Crime and Punishment)  
(사회: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① **Brandon GARRETT** 교수가 「**Lessons from Organizational Sentencing in the United States(미국의 법인 범죄 양형이 주는 교훈)**」라는 제목으로 발표
  -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판사로 하여금 법인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사형 조항'

corporate death penalty provision)'과 함께, ① 효과적인 준법윤리경영 프로그램(an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② 자율 신고, 협조 또는 책임의 수용(self-reporting, cooperation or acceptance of responsibility)을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당근과 채찍' 접근방식을 채택

- 법인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미국 기소협상 실무는 법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음 → 법인의 법규준수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중요함

② **김웅재** 교수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해석론(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South Korea: Doctrinal Analysis of Joint Penalty Provisions)」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 현행법상 법인 형사처벌의 실정법상 근거는 개별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양벌규정들인데,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음
- 현행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형사처벌의 규율방식은, ①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책임과 ② 대표자 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감독책임의 이원적 체계로 해석할 수 있음
-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을 양형에 있어서도 차별취급할 것인지, 감독책임의 요소인 감독과실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향후 논의가 필요함

**[지정토론]**

① **권보원** 판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지정토론 요지

-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떤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회사불법 억지를 위해서는 법인 처벌 가능성을 무한정 열어 둘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영역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큰 '중대사고형'에 집중함이 타당
- 형사절차에서 법인과 대표자를 동일시하게 되면 형사책임 성립(실체적 진실발



견) 측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정의는 일정 정도 상대화되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음. 대표자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수사와 재판의 단계에서 법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은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필요함

- 행위와 책임능력이 동시에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형사절차는 법인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음. 형법총칙 등을 통하여 법인 처벌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수단이나 자연인 행위자 처벌로는 불충분한 제한된 영역에 한하여 효과적으로 법인을 제재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함

## ②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지정토론 요지

- 법인의 범죄에 대하여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논쟁사항이므로, 그 다음 단계로 논의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양벌규정은 형사정책적 의도에 의하여 개별 법률에서 특히 법인처벌을 목적으로 둔 예외규정에 불과할 뿐인데, 법인의 범죄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 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오늘날 법인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를 발현함. 이 경우 반드시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을 이원화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성이론으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음. 결론적으로는 법인 고유의 조직형태를 인정하고 이사회 등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의사결정능력으로 보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행위능력으로 보아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 ③ 김유근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 요지

-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구성원의 개인 책임에 상응하지 않음. 또한 기업 활동에서 분업 및 아웃소싱은 일상적임 → 그렇다면 분업 및 아웃소싱에 의하여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1인의 행위만으로 이를 충족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성 이론이 기능하는지, 대표자의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만을 동일시되는 법인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문제됨

- 양벌규정의 법문언상 법인의 선임·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선임·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은 가중사유가 아니기 때문에(면책사유) 법인은 자연인의 본죄의 형으로 처벌됨. 따라서 양형의 여지도 그런 만큼 좁다고 생각됨
- 그밖에 입증책임의 문제,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기소 혹은 유죄답변협상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기업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저조한 이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입증책임, 기업에 대한 벌금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등을 질의함

## ■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루어진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 결과를 양형 기준 및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활용할 예정
- 향후 비교법적 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해외 양형위원회 및 해외 사법부와의 교류도 지속할 예정임